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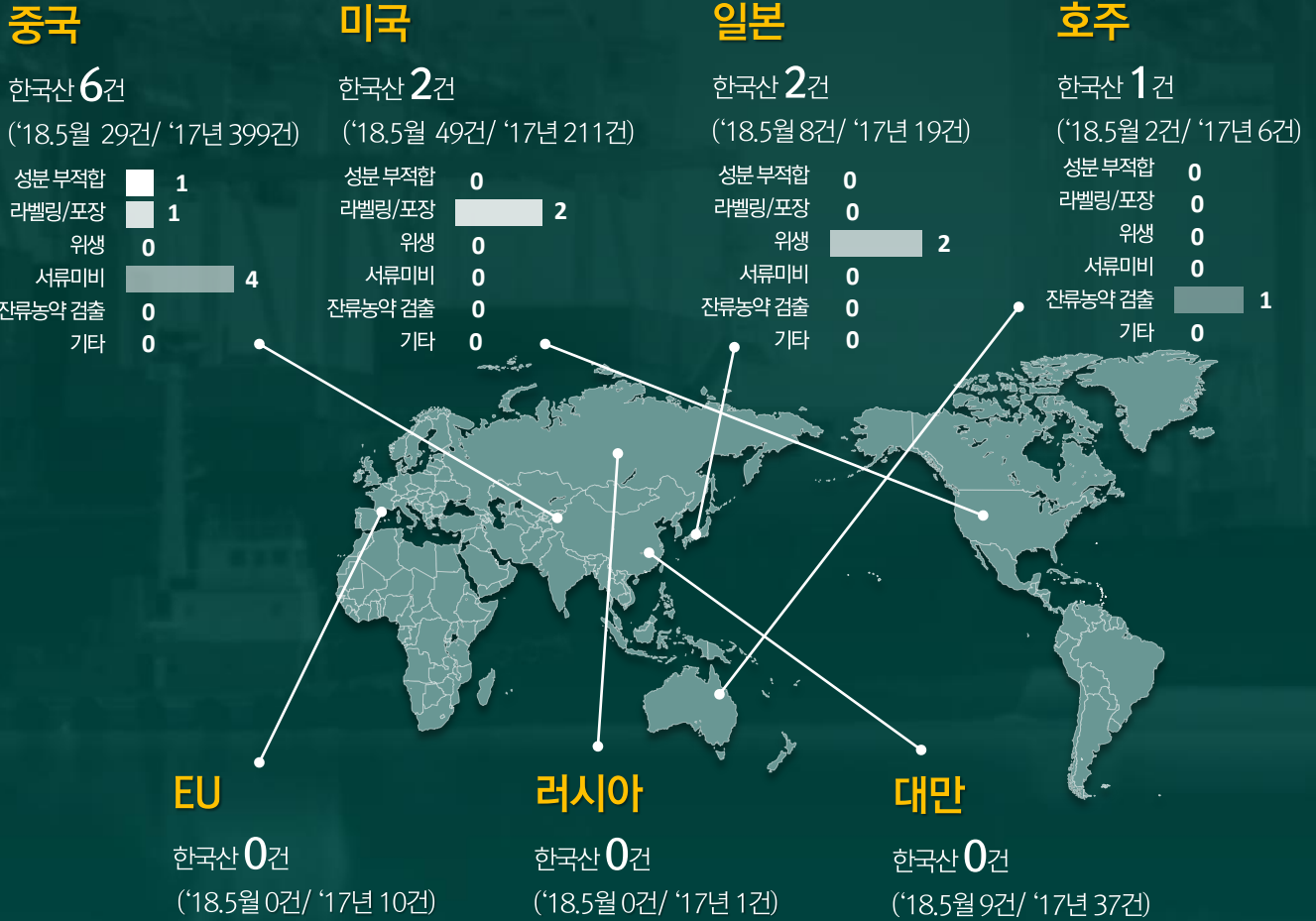
2018년 05월

농식품 통관거부 및 식품안전사례 동향분석

- I. 국가별 통관거부 사례
 - 1. (한국산)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통관거부 동향
 - 2.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목록
 - 3.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Case Study
 - 4. (글로벌) 통관거부사례
 - 5. (부록) 캐나다 글로벌 통관거부사례(1~3월)
- II. 국가별 식품안전사례 동향
- III. 국가별 통관검역제도 모니터링

I. 국가별 통관거부사례

1. (한국산)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통관거부 동향



한국산 수입 통관거부 제품별 현황

면류 / 총 2건



중국 2건

기타조제 농산물 / 총 2건



중국 2건

과자류 / 총 2건



미국 2건

버섯류 / 총 1건



호주 1건

과실류 / 총 1건



일본 1건

캐나다의 경우, 2018년 5월 통관거부 사례가 홈페이지에 미게재되어 확인이 불가능함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2.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목록

중국 5월 한국산 통관 거부 발생 사례(6건)

국가	발생일자	상품명	품목	세부품목	문제 사유구분	문제 사유	조치사항
중국	5월	볶은 아미씨	농산물	채유종실	서류미비	인증서류 미비	폐기 또는 반송
중국	5월	멸치맛 컵쌀국수	농산물	면류	서류미비	인증서류 미비	폐기 또는 반송
중국	5월	해물맛 컵쌀국수	농산물	면류	서류미비	인증서류 미비	폐기 또는 반송
중국	5월	미역	수산물	해조류	라벨링	라벨링 불합격	폐기 또는 반송
중국	5월	홍차맛 가루	농산물	기타 조제 농산품	성분	코코아껍질 색소, 황산알루미늄칼륨 사용범위 초과	폐기 또는 반송
중국	5월	홍차맛 가루	농산물	기타 조제 농산품	서류미비	인증서류 미비	폐기 또는 반송

미국 5월 한국산 통관 거부 발생 사례(2건)

국가	발생일자	상품명	품목	세부품목	문제 사유구분	문제 사유	조치사항
미국	5월	비스킷	농산물	과자류	라벨링	내용물의 정확한 수량 정보 미기재	-
미국	5월	비스킷	농산물	과자류	라벨링	영어로 미표기	-

일본 5월 한국산 통관 거부 발생 사례(2건)

국가	발생일자	상품명	품목	세부품목	문제 사유구분	문제 사유	조치사항
일본	5월	냉동 꽃감	농산물	과실류	위생	무가열 냉동식품 세균 수 기준치 초과	폐기 또는 반송
일본	5월	냉동 삶은 게	수산물	갑각류	위생	대장균 양성 반응	폐기 또는 반송

호주 5월 한국산 통관 거부 발생 사례(1건)

국가	발생일자	상품명	품목	세부품목	문제 사유구분	문제 사유	조치사항
호주	5월	팽이버섯	농산물	버섯류(농산물)	잔류농약	아세페이트 0.057mg/kg 검출	-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Case Study



중국의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Case: 서류 미비

한국 농산물 수출업체, 인증 서류 미비로 통관 거부

2018년 5월, 한국의 농산물 수출업체 3곳은 중국으로 자사 제품을 수출하였으나, 상해와 천진 검역소에서 서류 미비 문제로 통관이 거부되었음. 한국산 6건 중 4건이 서류 문제로 통관이 거부된 것임. 중국 국가질량 감독검험검역총국(AQSIQ)가 발표한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에 따르면, 제품 수입 신고 및 검역 검증 시에는 품질 증서, 산지 증명서, 안전위생증명서, 살충제·농약 및 첨가제 사용 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제출해야 함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
http://www.aqsiq.gov.cn/xxgk_13386/jlgg_12538/zjl/2012/201210/t20121015_235105.htm



중국의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Case: 라벨링

한국 수산물 수출업체, 라벨링 불합격으로 통관 거부

2018년 5월, 한국의 수산물 수출업체는 중국으로 자사의 미역 제품을 수출하였으나, 라벨링이 불합격되어 통관 거부되었음. 라벨링의 경우, 중국 위생부의 GB 7718-2011(포장 식품 표시에 관한 일반 규칙)을 준수해야 함. 해당 규정에 따르면, 식품 라벨은 식품 및 포장재와 분리되어서는 안됨. 라벨에는 외국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지만 외국어는 중국어보다 글자 크기가 작아야 됨

또한, 제품의 최대 표면적이 10cm² 이상 35 cm² 이하일 경우, 라벨 텍스트, 기호 및 숫자의 크기는 1.8mm보다 커야 함. 만약 표면적이 10cm² 이하일 경우에는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 내용만 표기해야 함. 이 외에도 개별 포장된 식품은 식품별 개별 라벨링을 부착해야 하며, 외부 포장재를 통해 식품 내용물을 식별할 수 있을 경우에는 라벨링에 별도 표기할 필요가 없음

▷ 중국 위생부, 「GB 7718-2011(포장 식품 표시에 관한 일반 규칙)」,
http://www.gov.cn/fwxx/jk/2012-02/03/content_2057829.htm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Case Study



중국의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Case: 성분

한국 농산물 수출업체, 식품 첨가물 사용 범위 초과하여 통관 거부

2018년 5월, 한국의 농산물 수출업체는 중국으로 자사 제품을 수출하였으나, 식품 첨가물이 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통관이 거부되었음. 중국 위생부의 식품 첨가물 사용 표준인 GB 2760-2014에 따르면, 코코아 껍질 색소(Cocoa husk pigment, 可可壳色)와 황산알루미늄 칼륨(Aluminium Potassium Sulfate, 硫酸铝钾)의 최대 허용치는 각각 0.9g/kg, 100mg/kg이나 해당 기준을 초과하였음

▷ 중국 위생부, 「GB 2760-2014(식품 첨가물 사용 표준)」,
<http://bz.cfsa.net.cn/staticPages/E13798C0-F243-4ACB-B541-C4E543349BE5.html>

3.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Case Study



미국의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Case: 라벨링

한국 비스킷 수출업체, 라벨링에 수량 정보 미기재하여 통관 거부

2018년 5월, 한국의 비스킷 수출업체는 미국에 자사 제품을 수출하였으나, 라벨링에 내용물에 대한 정확한 수량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 통관 거부되었음.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법(FD&C Act) IV: Food, Section 403(e)(2)에 의거, 라벨에 제조업자, 포장업자, 판매업자의 이름 및 주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물의 수량, 무게 등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정 표시 식품으로 간주함

▷ 미국, 식품, 의약품, 화장품 법(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 Act) Section. 403(e)(2)
<http://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43&num=0&edition=prelim>

한국 비스킷 수출업체, 라벨 정보 영어로 미표기하여 통관 거부

2018년 5월, 한국의 비스킷 수출업체는 미국에 자사 제품을 수출하였으나, 라벨링 정보를 영어로 표기하지 않아 통관 거부되었음. 21 CFR 101.15(C)에 따르면, 라벨링의 진술 및 다양한 정보는 영어로 기재되어야 하며, 영어 이외의 다른 공용어를 사용하는 푸에르토리코 연방은 예외가 될 수 있음. 또한, 라벨링 정보의 현저성 관련 규정인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법(FD&C Act) IV: Food, Section 403(f)에 의거, 라벨 또는 라벨링에 기재된 진술 및 다양한 정보가 현저하게 두드러지지 않거나 일반인이 구입 및 사용 방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없을 경우 부정 표시 식품으로 간주함

▷ 미국, 21 CFR 101.15(C)
<https://www.gpo.gov/fdsys/pkg/CFR-2012-title21-vol2/pdf/CFR-2012-title21-vol2-sec101-15.pdf>

▷ 미국, 식품, 의약품, 화장품 법(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 Act) Section. 403(f)
<http://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43&num=0&edition=prelim>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Case Study

● 일본의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Case: 위생

한국 농산물 수출업체, 세균 수 기준치 초과하여 통관 거부

2018년 5월, 한국 농산물 수출업체는 일본으로 냉동 꽃감을 수출하였으나, 세균 수의 기준치를 초과하여 통관 거부되었음. 일본 후생노동성의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에 따르면, 냉동 꽃감과 같은 무가열 냉동 식품의 세균 수 기준치는 100,000/g이나, 해당 제품에서는 1,800,000/g이 검출되었음

▷ 일본 후생노동성,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

<http://www.shokukanken.com/item/23>

한국 수산물 수출업체, 대장균군 양성 반응나와 통관 거부

2018년 5월, 한국 수산물 수출업체는 일본으로 냉동 삶은 게를 수출하였으나, 해당 제품에서 대장균군에 양성 반응이 나와 통관 거부되었음. 대장균에 감염될 경우,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과 같은 질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인체 건강에 유해한 물질임.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식품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법에 따르면, 세균수는 100,000/g 이하, 대장균군에는 음성 반응, 식중독을 발생하는 주요 원인균인 장염 비브리오 수치는 100이하/MPN를 충족시켜야 함

▷ 일본 후생노동성, 식품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

<http://www.shokukanken.com/item/23>

<http://www.mhlw.go.jp/shingi/2006/05/dl/s0522-5g.pdf>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Case Study



호주의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Case: 잔류농약

한국 농산물 수출업체, 잔류농약 허용치 초과하여 통관 거부

2018년 5월, 한국의 농산물 수출업체는 호주로 팡이버섯을 수출하였으나, 농약 물질인 아세페이트 (Acephate)의 최대 허용치를 초과하여 통관이 거부되었음. 잔류농약 허용치는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청 (FSANZ)의 FSC 1.4.2에 명시되어 있음. 해당 규정에 의거, 아세페이트의 잔류농약 허용치는 바나나 1mg/kg, 배추과 야채 5mg/kg, 계란 0.2mg/kg, 감자 0.5mg/kg임. 아세페이트의 최소 허용 기준치는 0.01mg/kg으로 이를 초과한 0.057mg/kg이 검출되어 통관 거부됨

▷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청(FSANZ), FSC 1.4.2,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8C00379>

Food Import Refusal by Coun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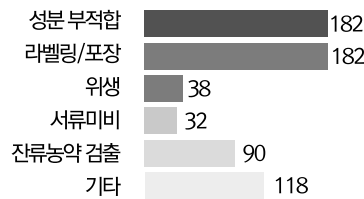
4. (글로벌) 통관거부사례

글로벌 수입 통관거부 유형별 현황(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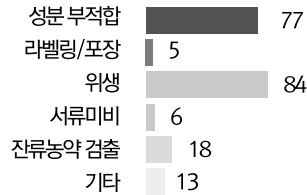
미국

총 642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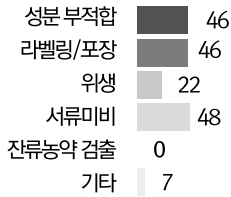
EU

총 20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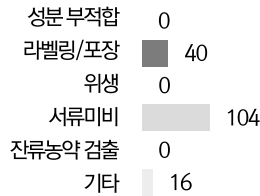
중국

총 169건



러시아

총 160건



일본

총 56건



대만

총 44건



호주

총 32건



Food Import Refusal by Canada

5. (부록) 캐나다 글로벌 통관거부 사례(1~3월)

캐나다 글로벌 통관거부 현황(1~3월)



한국산
(‘18.5월 0건/ ‘17년 0건)

1월 총 8건	2월 총 6건	3월 총 5건
성분 부적합 0	성분 부적합 0	성분 부적합 0
라벨링/포장 0	라벨링/포장 0	라벨링/포장 0
위생 0	위생 0	위생 0
서류미비 0	서류미비 0	서류미비 0
잔류농약 검출 0	잔류농약 검출 0	잔류농약 검출 0
기타 8	기타 6	기타 5

*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에서 분기별로 통관거부 현황 발표

캐나다 1월 글로벌 통관거부 발생 사례(8건)

수출국	상품명	품목	세부품목	문제 사유구분	문제 사유
영국	고체 스프	농산물	기타조제 농산품	기타	동물보건규정(Health of Animals Regulations) 미준수
영국	돼지껍데기	축산물	포유 가축 육류	기타	동물보건규정(Health of Animals Regulations) 미준수
프랑스	절인 돼지고기 (가공처리한 것)	축산물	포유 가축 육류	기타	식물보호법(Plant Protection Act and Regulations) 미준수
프랑스	소시지	축산물	기타육류	기타	동물보건규정(Health of Animals Regulations) 미준수
미국	누들	농산물	면류	기타	육류검역법(Meat Inspection Act and Regulation) 미준수
미국	차돌박이 (채썰고, 훈제한 것, 조미료 첨가)	축산물	포유 가축 육류	기타	육류검역법(Meat Inspection Act and Regulation) 미준수
미국	훈제한 돼지고기	축산물	포유 가축 육류	기타	육류검역법(Meat Inspection Act and Regulation) 미준수
터키	후지 사과	농산물	과실류	기타	식물보호법(Plant Protection Act and Regulations) 미준수

Food Import Refusal by Canada

5. (부록) 캐나다 글로벌 통관거부 사례(1~3월)

캐나다 2월 글로벌 통관거부 발생 사례(6건)

수출국	상품명	품목	세부품목	문제 사유구분	문제 사유
바하마	콘비프(쇠고기를 익혀 소금에 절인 것)	축산물	포유 가축 육류	기타	동물보건규정(Health of Animals Regulations) 미준수
프랑스	소시지	축산물	기타 육류	기타	육류검역법(Meat Inspection Act and Regulation) 미준수
프랑스	햄	축산물	기타 육류	기타	육류검역법(Meat Inspection Act and Regulation) 미준수
프랑스	파테(Pate)	농산물	과자류	기타	육류검역법(Meat Inspection Act and Regulation) 미준수
미국	소시지	축산물	기타 육류	기타	육류검역법(Meat Inspection Act and Regulation) 미준수
미국	뼈있는 쇠고기(안심)	축산물	포유 가축 육류	기타	육류검역법(Meat Inspection Act and Regulation) 미준수

캐나다 3월 글로벌 통관거부 발생 사례(5건)

수출국	상품명	품목	세부품목	문제 사유구분	문제 사유
중국	쇠고기 육포	축산물	포유 가축 육류	기타	동물보건규정(Health of Animals Regulations) 미준수
이탈리아	살라미 소시지	축산물	기타 육류	기타	동물보건규정(Health of Animals Regulations) 미준수
칠레	포도	농산물	과실류	기타	식물보호법(Plant Protection Act and Regulations) 미준수
멕시코	냉동 돼지 갈비	축산물	포유 가축 육류	기타	육류검역법(Meat Inspection Act and Regulation) 미준수
미국	크리미 치킨 덤플링	농산물	면류	기타	육류검역법(Meat Inspection Act and Regulation) 미준수

II. 국가별 식품안전사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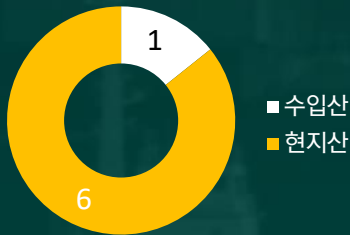


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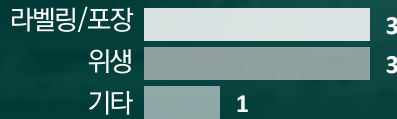
한국산 0건 / 총 7건
(*18.5월 0건)

2018년 5월 동안 호주에서 발생한 리콜¹⁾ 건수는 총 7건으로 현지산 6건, 수입산 1건인 것으로 조사됨. 수입산 리콜은 태국에서 발생한 것임. 리콜 발생 사유 1위는 라벨링/포장과 위생으로 각각 3건씩 집계되었음. 라벨링/포장의 경우, 계란, 생선, 글루텐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 향원을 미표기하였고, 위생의 경우, 제품에서 금속 및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되었음. 제품별로는 과자류 3건, 기타 조제 농산품 2건으로 가장 많았음

〈 리콜 원산지별 현황 〉



〈 리콜 유형별 현황 〉



〈 리콜 주요 제품별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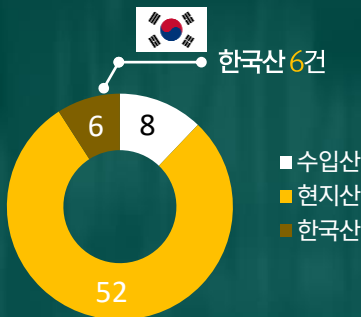


캐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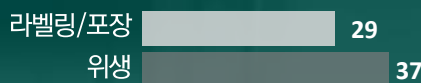
한국산 6건 / 총 66건
(*18.5월 17건)

2018년 5월 동안 캐나다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66건으로 수입산 8건, 현지산 52건, 한국산 6건인 것으로 조사됨. 한국산 제품 모두 라벨링에 우유와 달걀에 대하여 식품 알레르기 유발 향원을 미표기한 사유로 리콜되었고, 제품 모두 면류에 속함. 전체 리콜 발생 사유 1위는 위생으로 30건 중 19건이 식품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되었고, 이외 대장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Clostridium botulinum)과 같은 세균이나 식품에서 금속,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되었음. 수입국가 중 미국이 총 5건으로 가장 많이 리콜되었으며, 제품별로는 채소류 19건, 과실류 11건이 가장 많았음

〈 리콜 원산지별 현황 〉



〈 리콜 유형별 현황 〉



〈 리콜 주요 제품별 현황 〉



〈 한국산 리콜 유형별 현황 〉



〈 한국산 리콜 주요 제품별 현황 〉



1) 리콜은 현지 유통 단계에서 발생한 리콜 사례를 의미함

II. 국가별 식품안전사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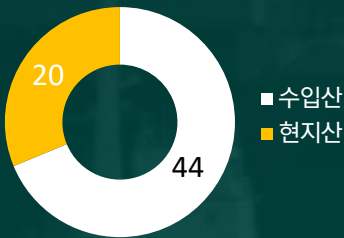
EU

한국산 0건 / 총 64건

(‘18.5월 0건)

2018년 5월 동안 EU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64건으로 수입산 44건, 현지산 20건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한국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리콜 발생 사유 1위는 성분 부적합으로 미허가 물질인 카벤다짐(Carbendazim), 트리아자포스(Triazophos) 등이 검출되었음. 2위는 위생 문제로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균, 대장균 등 미생물이 검출되거나 금속, 유리 조각 등이 발견됨. 리콜 제품은 과실류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어류, 포유 가축 육류가 그 뒤를 이음

< 리콜 원산지별 현황 >



< 리콜 유형별 현황 >



< 리콜 주요 제품별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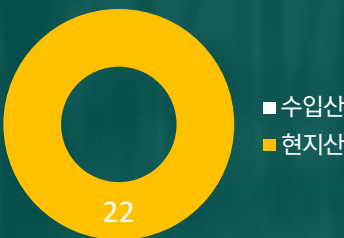
일본

한국산 0건 / 총 22건

(‘18.5월 0건)

2018년 5월 동안 일본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22건으로 22건 모두 일본 현지산인 것으로 조사됨. 리콜 발생 사유 1위는 기타 문제로 9건 중 8건이 유통기한을 잘못 표기하였음. 2위는 라벨링/포장으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해 미표기하였거나 원산지를 잘못 표기하였고, 포장과 관련하여서는 밀봉이 충분히 되지 않아 식품에 균열이 생김. 3위는 위생 문제로 제조 환경이 비위생적이어서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남. 제품별로는 과자류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류가 3건으로 그 뒤를 이음

< 리콜 원산지별 현황 >



< 리콜 유형별 현황 >



< 리콜 주요 제품별 현황 >



II. 국가별 식품안전사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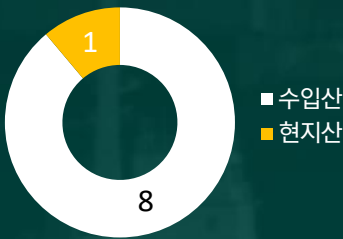
필리핀

한국산 0건 / 총 9건

(‘18.5월 7건)

2018년 5월 동안 필리핀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9건으로 수입산 8건, 현지산 1건으로, 한국산은 집계되지 않았음. 수입산 리콜은 말레이시아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국이 2건으로 2위를 차지함. 이 외 벨기에, 일본, 홍콩산 제품에서 리콜이 발생하였음. 리콜 사유 1위는 기타로 18건 모두 제품 등록 절차를 불이행하였음. 제품별로는 과자류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부분 캔디, 껌, 과자 등이었음. 이외 주류, 코코야류, 기타 조제 농산품 등 다양하게 나타남

< 리콜 원산지별 현황 >



< 리콜 유형별 현황 >

기타 9

< 리콜 주요 제품별 현황 >



과자류 / 총 5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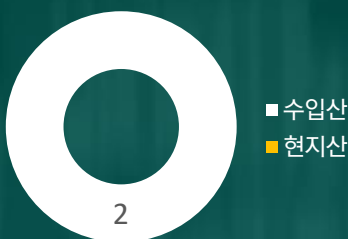
홍콩

한국산 0건 / 총 2건

(‘18.5월 2건)

2018년 5월 동안 홍콩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2건으로 모두 수입산이며 한국산은 집계되지 않았음. 수입산은 일본과 프랑스산임. 리콜 사유 중 위생 문제에서는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고, 기타 사유로는 제품이 파손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제품별로는 치즈를 포함한 낙농품 1건, 주류 1건이 집계되었음

< 리콜 원산지별 현황 >



< 리콜 유형별 현황 >

위생 1

기타 1

< 리콜 주요 제품별 현황 >



낙농품 / 총 1건



주류 / 총 1건

II. 국가별 식품안전사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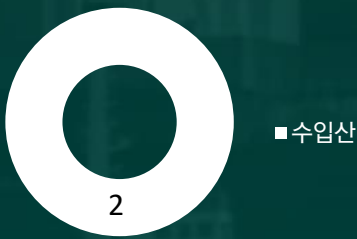


싱가포르

한국산 0건 / 총 2건
(‘18.5월 0건)

2018년 5월 동안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2건으로 한국산은 발견되지 않음. 2건 모두 수입산으로 말레이시아와 중국산 제품인 것으로 확인됨. 리콜 사유는 위생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말레이시아산 제품에서는 이물질이 발견되었으며, 중국산 제품에서는 이물질 검출이 의심되어 리콜되었음. 각 제품은 과실류와 채유종실에 속함

< 리콜 원산지별 현황 >



< 리콜 유형별 현황 >



< 리콜 주요 제품별 현황 >



과실류 / 총 1건



채유종실 / 총 1건

Monitoring on Global Customs Clearance and Regulation

Ⅲ. 국가별 통관검역제도 모니터링

미국 : 미국 하원, 非살균 생우유 유통 허용 법안 부결

미국 하원은 非살균 생우유의 유통 및 판매를 허용하는 축산법 개정안을 부결함. 표결에 앞서 미국 식약청(FDA)은 살균되지 않은 생우유를 마시는 것은 질병 감염을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하였음. 식품 안전 관련 시민단체들도 해당 개정안에 대한 부결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생우유 유통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 왔음

▷ 관련 링크

<http://www.foodsafetynews.com/2018/05/house-members-ignore-party-lines-defeat-raw-milk-measure/#.WwSv8EjRCIM>

미국 : 미국 환경보호국(EPA), 아세퀴노실 잔류 허용 수치 개정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구아바(Guava)와 열대 및 아열대 지방 열매 내 아세퀴노실(Acequinocyl) 농약의 잔류 허용 수치에 대한 규정을 수정함. 구아바는 0.9ppm, 열대 및 아열대 지방 열매는 2.0ppm으로 조정됨. 해당 규정은 6월 7일부터 유효하며 이와 관련한 이의 제기는 오는 8월 6일까지 접수해야 함

▷ 관련 링크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8/06/07/2018-12297/acequinocyl-pesticide-tolerances>

<https://www.gpo.gov/fdsys/pkg/CFR-2017-title40-vol26/xml/CFR-2017-title40-vol26-part178.xml>

Monitoring on Global Customs Clearance and Regulation

Ⅲ. 국가별 통관검역제도 모니터링

캐나다 : 캐나다 식품검역청, 캐나다 식품안전규정(SFCR) 발표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은 식품안전규정(SFCR, Safe Food for Canadians Regulations)의 최종안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규정은 2019년 1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동 규정은 2012년에 통과된 이후로 이해관계자,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이 마련된 것임.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은 SFCR 최종안이 국제식품안전표준(International Food Safety Standards)을 충족하고, 향후 캐나다 식품에 대한 시장 접근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함

▷ 관련 링크

<http://www.foodincanada.com/food-in-canada/final-safe-food-for-canadians-regulations-are-published-cfia-139800/>
<https://www.canada.ca/en/food-inspection-agency/news/2018/06/government-of-canada-announcement-on-safe-food-for-canadians-regulations.html>

캐나다 : 캐나다 식품검역청, 맥주산업 발전 위한 제품 표준기준 변경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은 자국 맥주산업 발전을 위한 맥주표준기준 변경 시행을 예고함. 해당 시행안에는 1) 맥주 발효 시 효모 이외의 다른 미생물 이용을 허용하고, 2) 맥주 풍미의 다양화를 위한 잔류 당 함량 기준 4% 제한, 3) 허브 등 향신료를 맥주 성분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됨. 해당 시행안은 90일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4일 시행될 예정임

▷ 관련 링크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food-nutrition/public-involvement-partnerships/modification-permitted-food-additives-stearic-acid-1.html>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food-nutrition/food-safety/food-additives/lists-permitted/8-other-accepted-uses.html>

Monitoring on Global Customs Clearance and Regulation

Ⅲ. 국가별 통관검역제도 모니터링

호주 : 호주상공회의소, 호주 농약 및 동물약품청(APVMA) 규제 개혁 보고서 발표

호주 상공회의소는 호주 농약 및 동물약품청(APVMA)이 시행한 규제 개혁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호주 상공회의소는 호주의 농약 및 동물약품 산업에 대한 규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APVMA의 지속적인 개혁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후속 감사를 시행할 것을 포함하여 4가지 권고안을 제안함

▷ 관련 링크

<https://www.miragenews.com/apvma-regulatory-reforms-report-tabled/>

호주 : 호주 농업수자원부, 새우 수입 조건 개정

호주 농업수자원부는 실험실 분석 또는 관능 평가를 위해 새우를 포함한 제품에 대하여 수입 조건을 수정하였음. 새우는 흰반점바이러스, 노랑머리 바이러스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 양식업 및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수정된 요구사항은 위탁화물 중량은 10kg 이하이어야 하고, 생물다양성보전수준(Bio security containment)은 5.2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함

▷ 관련 링크

<https://bicon.agriculture.gov.au/BiconWeb4.0/ViewElement/Element/Alert?elementPk=841036>

Monitoring on Global Customs Clearance and Regulation

Ⅲ. 국가별 통관검역제도 모니터링

EU : 유럽 소비자기구(BEUC), 식품 함량 표기 라벨링 규정 강화 촉구

EU 내 10개국 소비자 단체를 대표하는 유럽소비자기구(BEUC)는 '장인정신', '통곡물 함유' 등과 같이 정량화 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식품 함량 표기를 개선할 것을 촉구함. BEUC는 식품에 포함되는 성분에 대한 정확한 함량과, '자연', '장인정신'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라벨에 사용되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주요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엄격한 사용 규제를 요구함

▷ 관련 링크

<https://www.foodnavigator-asia.com/Article/2018/06/13/Consumers-do-not-trust-food-labels-and-they-have-good-reason-EU-consumer-organisation-calls-for-tougher-labelling-regulation>

EU : 유럽식품안전청, 16개월 이하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살충제 농약잔류허용기준 전면적인 검토 시행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16개월 이하의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살충제의 잔류농약허용기준(MRLs)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했으며, 이에 대한 기준치를 새로 마련함. 이전의 Regulation (EU) No 609/2013에서 검토되지 않았던 여러 식품 및 성분들에 대한 대대적인 평가가 있었고, 해당 평가는 새로운 검토법에 의한 것임

▷ 관련 링크

<http://www.efsa.europa.eu/en/press/news/180628>

Monitoring on Global Customs Clearance and Regulation

Ⅲ. 국가별 통관검역제도 모니터링

중국 : 해관총서, <수출입화물통관서> 취소 관련 공고 발표

중국 해관총서는 글로벌 무역 편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입화물통관서(入/出境货物通関单)> 취소 공고를 발표함.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6월 1일부터 적용됨

1) 법적으로 검역검증 수입 화물의 경우

- 통관신고서 첨부서류란에 기 신고서 코드 및 번호를 기입하지 않음
- 해당 기업들이 '단일창구'(인터넷+해관 접속 창구)를 통해 한꺼번에 신고 가능함
- '단일창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첨부서류란에 전자전표 검증검역 코드 및 'A'를 작성해야 함

2) 법적으로 검역검증 수출 화물의 경우

- 기업들이 통관신고서 첨부서류란에 기 신고서코드 및 번호를 기입하지 않고 전자전표에 기업 전자 명세서 코드 및 'B'를 작성해야 함

▷ 관련 링크

<http://news.foodmate.net/2018/05/468685.html>

중국 : 국무원, 분유 품질 제고 관련 의견 발표

분유가 중국에 중요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분유 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국 국무원은 분유 총요구사항(지도 사상, 기본원칙, 주요목표), 우수 분유 공급처 선택, 가공 및 유통 시스템, 품질 감독, 소비자 관념 및 보완제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음. 분유가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중국 고위 관리급에서 분유 감독에 신경을 두고 있음

▷ 관련 링크

<http://www.foodmate.net/law/shipin/193697.html>

Monitoring on Global Customs Clearance and Regulation

Ⅲ. 국가별 통관검역제도 모니터링

일본 : 신선 식품 표시 기준 개정

일본은 신선 식품의 기능성 표시 제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선 식품 표시 기준을 개정하였음. 개정 내용은 하기와 같음

1. 신선 식품 표기 내용은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용기 포장의 형상 등에 의해 직접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별도의 방법으로 표시 가능
2. 신선 식품의 기능성 표시 예시 추가 가능

▷ 관련 링크

https://www.foods-ch.com/anzen/news_00250/

일본 : 식품 표시에 관한 공정 경쟁 규약 및 동 시행 규칙 개정

일본 정부는 명란젓, 식초, 일반 커피 및 인스턴트 커피 식품에 대하여 식품 표시에 관한 공정 경쟁 규약 및 동 시행 규칙을 개정하였음. 개정 내용은 하기와 같음

식품	개정 내용
명란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표시 기준 개정 ("첨가제" "원료 원산지 명" "영양 성분 표시"의 사항 추가 등) - 특정 사항 (상품에 지역명 표시, 상을 받은 사실 등)을 표시하는 경우의 기준 추가 - 특정 용어 ("천연", "손수", "비전", "하카타 명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기준 추가
식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표시 기준 개정 적용 ("첨가물" "영양"의 사항 추가 등) - 약관의 규정 중 "제 11 조 제 1 항"을 "제 31 조 제 1 항"으로 변경 - 어구의 정리 「はちみつ(꿀의 히라가나 표기)」⇒「蜂蜜(꿀의 한자표기)」
일반 커피 및 인스턴트 커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귤러 커피와 인스턴트 커피의 정의 변경 - 레귤러 커피와 인스턴트 커피를 혼합 한 상품에 대해 일반 커피의 비율이 많은 것은 "레귤러 커피", 인스턴트 커피의 비율이 많은 것은 '인스턴트 커피'로 정의 - 식품 표시 기준 개정 적용 ("식품 관련 사업자" "영양 성분의 양과 열량" 등의 사항 추가)

▷ 관련 링크

https://www.foods-ch.com/anzen/news_00256/

<http://tp.chuohoki2.jp/con/inline/TopicsDetail.aspx?id=20180518-001>

<http://tp.chuohoki2.jp/con/inline/TopicsDetail.aspx?id=20180521-001>

Monitoring on Global Customs Clearance and Regulation

Ⅲ. 국가별 통관검역제도 모니터링

대만 : 화물통관자동화매뉴얼 및 예보화물통관매뉴얼 개정 내용 발표

대만 재정부 산하의 관무서(Customs Administration, Ministry of Finance)는 화물통관자동화매뉴얼(貨物通關自動化報關手冊)과 예보화물통관매뉴얼(預報貨物通關報關手冊)의 개정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오는 8월 20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화물통관자동화매뉴얼은 크게 상권과 하권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중 상권의 6. 수입통관사용규격(進口通關使用表格)의 정보운영규칙(訊息之作業規定), 60번 제5135호 수입특송화물간이신고서(進口快遞貨物簡易申報單)의 내용이 개정되었음. 예보화물통관매뉴얼의 경우, 수입편 3. 수입화물통관작업기본규정(進口貨物通關作業基本規定), 15번 택배화물통관작업(快遞貨物通關作業) 내용이 개정되었음

▷ 관련 링크

https://web.customs.gov.tw/News_Content.aspx?n=3655DD2CDA2ED6C1&sms=9FA66FA17135CFC2&s=52302FA9B61B5457